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1366 |
| 의 뢰 인 | 위성곤의원 |
| 회 답 일 | 2024.7.5. |
| 추계번호 | 24B1620 |

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16조의2 신설(농산물가격안정제도) |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,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2 | 안 제16조의3 신설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|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(제1항)<br>1. 대상 품목의 선정<br>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<br>3. 차액의 지급비율<br>4. 농산물의 매입·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<br>5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<br>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| 의무규정 |
| 3 |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(기금의 용도) |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음(제1항)<br>2의2.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| 재량규정 |

# Ⅱ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|---|---|
| 1, 3 | 안 제16조의2 신설(농산물가격안정제도)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|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(기금의 용도) | |
| 2 | 안 제16조의3 신설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| • 미대상<br>–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현행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[1]에 따라 운영중인 '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'를 활용하여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 |

## 2. 상세 사유: 농산물가격안정제도(안 제16조의2 신설), 기금의 용도(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)

❑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소,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, 즉 '농산물가격안정제도'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, 농산물가격안정기금[2]의 용도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출을

1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(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
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
1.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2) 법 제54조(기금의 설치) 정부는 농산물(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

추가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**(농산물 기준가격)** 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),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

❑ 특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상 농산물 품목,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, 생산량, 지급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
○ 추가재정소요 = $\sum_{i,t}$(주요 농산물 품목 가격하락분 차액 지급액$_{i,t}$)

= $\sum_{i,t}$[(품목별 기준가격 - 품목별 시장가격)$_{i,t}$ × 품목별 생산량$_{i,t}$

× 품목별 차액 지급비율$_{i,t}$]

– 이때 (품목별 기준가격 -품목별 시장가격) > 0인 경우에 해당

– $t$는 추계기간 5년, $i$는 가격안정 대상 농산물 품목(채소, 과일 등)

❑ 그러나 개정안은 가격안정 대상 농산물 품목, 차액의 지급비율, 기준가격, 생산비용 등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[3] 구체적 지원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,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--

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3) 안 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 ① (생 략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❑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[4]에 따라 2016년부터 '채소가격안정제'를 실시하고 있음

○ 농업인 또는 농협이 배추, 무 등 주요 채소(7개 품목)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,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 하락분의 일부 보전

※ [참고자료]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참고

4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) ① 시·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(需給)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(이하 "주산지"라 한다)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6조(계약생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, 지역축산업협동조합,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)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(이하 "생산자단체"라 한다)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
# 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Ⅳ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경제비용추계과 | 이주호 | 이유미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이주호 | 02-6788-3746 | progress@nabo.go.kr |

## [참고자료] 채소가격안정제 개요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❑ (도입경과) 계약재배만으로는 **농가의 소득안정** 및 **선제적 수급대책** 추진이 어려워 노지채소 **수급조절 기능 강화**를 위해 '16년부터 도입

| 구분 | '16년(시범) | '17 | '18 | '19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규 대상품목 | 배추 (여름,겨울), 무(겨울) | 배추·무 (숟작형), 양파, 마늘 | 고추, 대파 | — | 감자 | — | — | — | — |
| 예산(억원) | 35 | 100 | 168 | 186 | 241 | 340 | 451 | 552 | 552 |

❑ (주요내용) 농업인 또는 농협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,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는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

○ **(의무 사항)**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%까지 출하前 면적조절(생육단계 폐기), 출하정지,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

- **(과잉시)** 가입물량의 50%까지 출하前 면적조절, 출하정지,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,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
- **(부족시)** 가입물량의 50%까지 출하시기 조절,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,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

○ **(지원 사항)** 공동재원*을 활용해 **수급조절 의무 이행**에 따른 소요 비용** 지원하고, **평년 가격의 최대 80%** 수준 보장

* 국고 30%, 지방비 30%, 농협 20%(경제지주 10, 사업농협 10), 농업인 20%

** (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) 소요된 생산비 수준, (출하조절) 운송비·작업비

❑ (추진체계) 지자체·농협·농업인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, 수급대책 수립·추진

| 사업 신청 및 계획 수립 | → | 물량 · 예산 배정 | → | 계약 및 재원조성 | → | 수급대책 추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(협의체) 신청, 계획 수립<br>(농식품부) 계획 승인 | | (농식품부) 시도별 배정<br>(협의체) 지역농협별 배정 | | (농협) 농업인과 계약 체결 및 공동재원 조성 | | (협의체) 대책수립 · 의결<br>(농협) 대책시행 및 정산 |

# 붙임 채소가격안정제 발동 사례

## 1 가격차보전: 22년산 제주 조생양파

❑ (보전방법) 당해연도 도매시장(가락시장) 거래가격이 **5년 평년가격**(기준가격)의 80% 수준(보전기준가격)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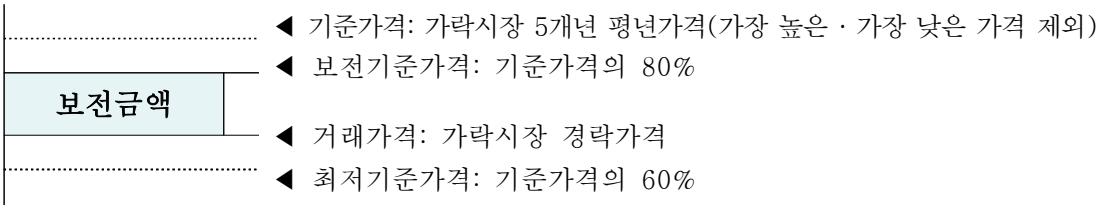


○ 보전산출방식: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, 보전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사업비에서 보전

❑ (보전사례) 제주 조생양파('22. 3월 하순~5월 상순, 8,541톤/420백만원)

❑ '22년산 재고량 이월, 조생종 생산량 증가로 4월 상품 도매가격은 평균 611원/kg, 평균가 471원(전년비 39%↓, 평년비 32%↓)

(단위:원/kg)

| 순기별 | 시장가격(도매가격) | | | | | 농가 | 생산비 | 보전기준 | 최저기준 | 차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특 | 상 | 중 | 하 | 평균 | 수취가* | 경영비 | 가격(80%) | 가격(60%) | (보전단가) |
| 3월 하 | 618 | 393 | 256 | 160 | 303 | 233 | 434 | 794 | 595 | 199 |
| 4월 상 | 841 | 492 | 289 | 146 | 359 | 271 | 309 | 781 | 586 | 195 |
| 5월 상 | 666 | 551 | 478 | 335 | 484 | 372 | | 577 | 433 | 93 |

* 농가수취가: 도매평균가격-출하제비용(상장수수료 포함)을 제외한 금액
* 시장평균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 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

## 2 출하정지 및 산지폐기: 22년산 제주 조생양파

❑ (보전방법) 가격하락 시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 후,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전 정리 및 손실보전

○ 보전금액: 보전기준액(기준가격 × 농업인수취율 - 출하비용) × 출하정지 면적

❑ (보전사례) '22년산 조생양파('22.3.22.~4.30.) 2.3만톤 출하연기(200원/kg 선지원)하고, 제주조생양파 94ha 산지폐기* 실시

* 산지폐기(물량): 94ha(2,643톤), 지원단가: 453원/kg(9,060원/평), 사업비: 1,197백만원

## 3 출하장려: 22년산 강원 고랭지 배추

❑ 고랭지 배추('22. 9월 상순) 위기단계 심각으로 1,468톤(165대), 248백만원 지원

* 배추 도매가격('22.8.29.~8.31.): 19,223원/10kg(상승심각)
* 배추 7~8월 평균: 14,403원

(참고) 22년산 조생양파 기준가격 및 거래가격 산출기준 <순별 산출>

❑ 기준가격(평년가격): 857원/kg

(단위: 원/kg)

| 3월 하순 | 4월 상순 | 4월 중순 | 4월 하순 | 5월 상순 |
|---|---|---|---|---|
| 992 | 976 | 863 | 732 | 721 |

* 산출기준: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를 반영한 **가중평균**의 5개년 평년가격
(평년가격: 최대년, 최소년 제외한 3개년의 평균가격)
*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(양파 품목) : 특(5%), 상(35%), 중(40%), 하(20%)
例)'16.7 등급별 가격(특품 814, 상품 723, 중품 591, 하품 409)
가중평균은 612(=814×5% + 723×35% + 591×40% + 409×20%)

❑ 보전기준가격(차액보전의 기준): 686원/kg

(단위: 원/kg)

| 3월 하순 | 4월 상순 | 4월 중순 | 4월 하순 | 5월 상순 |
|---|---|---|---|---|
| 794 | 781 | 690 | 586 | 577 |

* 산출기준: 기준가격×80%
* 보전기준가격은 보장가격이 아님. 평년가격과 당해연도가격과의 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임

❑ 최저기준가격: 514원/kg

(단위: 원/kg)

| 3월 하순 | 4월 상순 | 4월 중순 | 4월 하순 | 5월 상순 |
|---|---|---|---|---|
| 595 | 586 | 518 | 439 | 433 |

* 산출기준: 기준가격×60%

❑ 시장평균가격(가락시장)

* 순별 가중평균: [∑{(해당순기 일자별 등급별 가격)×등급별 물량비{특(5%), 상(35%), 중(40%), 하(20%)}}]/(해당순기 영업일수)